

“
고용인원 증감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계산 및 서식 작성 방법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고용인원 증감에 대한 다양한 사례별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방법과 서식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 6가지 사례 중 귀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신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ASE1인 경우 2019사업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상시근로자 증가하고,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상황에 적용됩니다.

CASE 1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click](#)

CASE 2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click](#)

CASE 3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click](#)

CASE 4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click](#)

CASE 5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click](#)

CASE 6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click](#)

CASE 1**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2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1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8,0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3,3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2 - 3 = \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명 (4명이 아님에 주의)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공제금액 없음 총 3,3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첫페이지로 이동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2 - 3 = \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19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2 - 3 = \triangle 1$ (명) 감소 총 3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첫페이지로 이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②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11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8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3
---------------------------------	--------------------------------	----------------------------------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9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5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4
-------------------------------------	-------------------------------------	---------------------------------------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2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3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1
--	--	---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⑯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3	1천1백만원	3,300만원
		청년 등 외		7백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3		3,300만원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⑯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1	8	3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⑯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㉒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㉒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㉓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㉒-㉓)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㉕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 로자 증가 세액 공제액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㉗ 3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부			
여	여			

④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⑯ + 2차년도 세액공제액 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 ㉗ 8,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첫페이지로 이동

CASE 2**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6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triangle 4$ (명) 감소

청년외: $5 - 3 = 2$ (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첫페이지로 이동](#)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 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1 - 5 = △4(명) 감소

청년외: 5 - 3 = 2(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textcircled{1} 3\text{명}) - \textcircled{2} 2\text{명}) \times (\textcircled{3} 1,100\text{만원}) - \textcircled{4} 700\text{만원}\} + (\textcircled{5} 2\text{명}) \times \textcircled{6} 1,100\text{만원} = 2,600\text{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1)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textcircled{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textcircled{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circled{3}$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circled{4}$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textcircled{5}$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circled{6}$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circled{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 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textcircled{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textcircled{3}$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textcircled{4}$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textcircled{5}$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textcircled{6}$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첫페이지로 이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3. 20.>

(앞쪽)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①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조정금액 ⑪ 차가감소금액 (⑩+⑫-⑬) ⑫ 기부금한도초과액 ⑯ 기본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⑭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⑫-⑯)	01 02 03 04 05 54 06	⑬ 감면분추가납부세액 (⑮-⑯+⑰) ⑭ 차감납부할세액 (⑯-⑬+⑰)	29 30	26 000 000
과세표준계산	② 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⑭) ⑩ 이월결손금 ⑪ 비과세소득 ⑫ 과세표준 (⑩-⑨-⑩-⑪) ⑯ 선박표준이익	07 08 09 10 55	⑤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계산	⑬ 등기자산 ⑭ 미등기자산 ⑮ 비과세소득 ⑯ 과세표준 (⑮+⑯-⑭) ⑯ 세율 ⑭ 산출세액 ⑮ 감면세액 ⑯ 차감세액 (⑩-⑭) ⑯ 공제세액 ⑯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 (가산세 제외) ⑯ 가산세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⑯ 가감계 (⑯-⑯+⑯+ ⑯) ⑯ 수시부과세액 ⑯ () 세액 ⑯ 계 (⑯+⑯) ⑯ 차감납부할세액 (⑯-⑯)	31 32 33 34 35 36 37 38 39 58 40 41 42 43 44 45
	⑬ 과세표준 (⑩+⑯) ⑯ 세율 ⑯ 산출세액 ⑯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⑯ 세율	56 11 12 13 14			

첫페이지로 이동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12) 구 분	(13) 근거법 조항	코드	(14) 대상금액	(15)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16)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7)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 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19) 기타		775	26,000,000	26,000,000
	(20) 소계		780	26,000,000	26,000,000
	(21)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법인세법 등	(22) 업무 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23)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24)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25)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26) 기타		785		
	(27) 소계		784		
(28) 추가납부세액 합계(19 + 20)			790	26,000,000	26,000,000

사업연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9) 구 분	(20) 공제감면 받은연도	(21) 추가납부 사 유	(22) 공제감면 세 액	가 산 액			(26)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23)이율 (일변)	(24)기간	(25)금 액 (22×23×24)	
1	2018	청년근로자 감소	26,000,000	-	-	-	26,000,000
계			26,000,000				26,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⑦(⑨+⑯+⑧)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	세	표	준		0
⑧산	출	세	액		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	, 2.5/10,000)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0
⑪기	납	부	세	액	5,200,000
⑫차감납부할세액					△ 5,200,000
⑬분	납	할	세	액	0
⑭차	감	납	부	세	액
⑮총	당	후	납	부	세
⑯국	세	환	급	금	환급법인세
총	당	신	청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

CASE 3**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4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5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triangle 1$ (명) 감소

청년외: $1 - 3 = \triangle 2$ (명) 감소 총 3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triangle 1$ (명) 감소

청년외: $1 - 3 = \triangle 2$ (명) 감소 총 3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첫페이지로 이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 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5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4 - 5 = \triangle 1(\text{명})$ 감소

청년외: $1 - 3 = \triangle 2(\text{명})$ 감소 총 3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1(명) × ②1,100(만원) = 1,100만원

청년외: ③2(명) × ④700(만원) = 1,400만원 총 2,5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1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2019.12.31.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⑪ 소득조정금액 ⑫ 차가감소득금액 ⑬ 기부금한도초과액 ⑭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⑮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1 02 03 04 05 54 06	⑯ 감면분추가납부세액 ⑰ 차감납부할세액 (⑯-⑭+⑮)	29 30	25 000 000
② 과세표준계산	⑯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⑪)	07	⑯ 등기자산 ⑰ 미등기자산	31 32	
	⑯ 이월결손금 ⑩ 비과세소득 ⑪ 소득공제 ⑫ 과세표준 (⑩-⑯-⑪)	08 09 10	⑯ 비과세소득 ⑯ 과세표준 (⑯+⑰-⑯)	33 34	
	⑯ 선박표준이익	55	⑯ 세율 ⑯ 산출세액 ⑯ 감면세액 ⑯ 차감세액 (⑯-⑯) ⑯ 공제세액 ⑯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 (가산세 제외) ⑯ 가산세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⑯ 가감계(⑯-⑯+⑯+ ⑯) ⑯ 수시부과세액 ⑯ () 세액 ⑯ 계 (⑯+⑯) ⑯ 차감납부할세액(⑯-⑯)	35 36 37 38 39 58 40 41 42 43 44 45	
③ 법인세계산	⑯ 과세표준(⑯+⑯) ⑯ 세율 ⑯ 산출세액 ⑯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⑯ 세율	56 11 12 13 14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12) 구 분	(13) 근거법 조항	코드	(14) 대상금액	(15)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16)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7)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 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19) 기타		775	25,000,000	25,000,000
	(20) 소계		780	25,000,000	25,000,000
	(21)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법인세법 등	(22) 업무 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23)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24)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25)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26) 기타		785		
	(27) 소계		784		
(28) 추가납부세액 합계(19 + 20)			790	25,000,000	25,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업연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9) 구 분	(20) 공제감면 받은연도	(21) 추가납부 사 유	(22) 공제감면 세 액	가 산 액			(26)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23)이율 (일변)	(24)기간	(25)금 액 (22×23×24)	
1	2018	청년 및 청년 외 근로자 감소	25,000,000	-	-	-	25,000,000
계			25,000,000				25,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⑦(9+18+26)

25,000,000

첫페이지로 이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	세	표	준	0		
⑧산	출	세	액	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	, 2.5/10,000)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0		
⑪기	납	부	세	액 5,000,000		
⑫차감납부할세액				△ 5,000,000		
⑬분	납	할	세	액 0		
⑭차	감	납	부	세	액 △ 5,000,000	
⑮총	당	후	납	부	세	액 △ 5,000,000
⑯국	세	환	급	금	환급법인세	
총	당	신	청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

CASE 4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2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7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9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2,1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triangle 3$ (명) 감소

청년외: $7 - 3 = 4$ (명) 증가 총 1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명 (4명이 아님에 주의) $\times 700\text{(만원)} = 700\text{(만원)}$ 총 7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제2호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times 0$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이하 생략)

2) 2차년도 공제금액 (1,4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triangle 3$ (명) 감소

청년외: $7 - 3 = 4$ (명) 증가 총 1명 증가

첫페이지로 이동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공제금액 없음

청년외: 1,400(만원)

총 1,400(만원) 공제

=>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였으나(2018년 5명 → 2019년 2명) 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 8명 → 2019년 9명) **2018년도 청년외 근로자 공제받은 금액(1,400만원)**을
2019년도에 한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생략)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1,2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2 - 5 = \triangle 3(\text{명})$ 감소

청년외: $7 - 3 = 4(\text{명})$ 증가 총 1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①3(\text{명}) \times (②1,100(\text{만원}) - ③700(\text{만원}))\} = 1,200\text{만원}$

청년외: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1,2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나목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times (②법 제
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3명**)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③ 같은 항(법 제29조의7제1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②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9	8	1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2	5	△3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7	3	4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⑯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1천1백만원	
	청년 등 외	1	7백만원	7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계		1			700만원
중견 기업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계				
일반 기업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4백만원		
	계				

210mm × 297mm [백상지 80g/m²]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⑯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9	8	1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 자 증가 세액공제 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부			
	여		1,400만원	1,400만원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㉒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㉓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㉕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㉒-㉔)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 로자 증가 세액 공제액	㉗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㉘ 3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부			
	여			
여				

④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⑯ + 2차년도 세액공제액 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 ㉘ 2,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①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소득조정금액 ⑪ 차가감소득금액 (⑩+⑫-⑬) ⑫ 기부금한도초과액 ⑬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⑭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⑩+⑫-⑪)	01 02 03 04 05 54 06	⑯ 감면분추가납부세액 ⑯ 차감납부할세액 (⑮-⑯+⑰) ⑯ 등기자산 ⑯ 미등기자산 ⑯ 비과세소득 ⑯ 과세표준 (⑯+⑯-⑯) ⑯ 세율 ⑯ 산출세액 ⑯ 감면세액 ⑯ 차감세액 (⑯-⑯) ⑯ 공제세액 ⑯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 (가산세 제외) ⑯ 가산세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⑯ 가감계(⑯-⑯+⑯+ ⑯) ⑯ 수시부과세액 ⑯ () 세액 ⑯ 계 (⑯+⑯) ⑯ 차감납부할세액(⑯-⑯)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58 40 41 42 43 44 45
② 과세표준계산	⑯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⑯=⑯) ⑯ 이월결손금 ⑯ 비과세소득 ⑯ 소득공제 ⑯ 과세표준 (⑯-⑯-⑯-⑯) ⑯ 선박표준이익	07 08 09 10 55		
③ 법인세계산	⑯ 과세표준(⑯+⑯) ⑯ 세율 ⑯ 산출세액 ⑯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⑯ 세율	56 11 12 13 14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12) 구 분	(13) 근거법 조항	코드	(14) 대상금액	(15)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16)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7)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 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19) 기타		775	12,000,000	12,000,000
	(20) 소계		780	12,000,000	12,000,000
	(21)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법인세법 등	(22) 업무 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23)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24)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25)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26) 기타		785		
	(27) 소계		784		
(28) 추가납부세액 합계(19 + 20)			790	12,000,000	12,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업연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9) 구 분	(20) 공제감면 받은연도	(21) 추가납부 사 유	(22) 공제감면 세 액	가 산 액			(26)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23)이율 (일변)	(24)기간	(25)금 액 (22×23×24)	
1	2018	청년근로자 감소	12,000,000	-	-	-	12,000,000
계			12,000,000				12,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⑦(⑨+⑯+⑧)

12,000,000

첫페이지로 이동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⑦과	세	표	준	(2019년 공제금액)	21,000000
⑧산	출	세	액		4,200,000
(미납부(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세율)		(,	, 2.5/10,000)	
⑨가	산	세	액		
⑩총	부	담	세	액	4,200,000
⑪기	납	부	세	액	2,400,000
⑫차감납부할세액					1,800,000
⑬분	납	할	세	액	-
⑭차	감	납	부	세	액
⑮총	당	후	납	부	세
⑯국	세	환	급	금	환급법인세
총	당	신	청		총당할 농어촌특별세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1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

CASE 5**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감소**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6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1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7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 (명) 증가

청년외: $1 - 3 = 2$ (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 (명) 증가

청년외: $1 - 3 = 2$ (명) 감소 총 1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첫페이지로 이동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 생략)

=>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7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18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6 - 5 = 1$ (명) 증가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청년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청년외: ③1명 (2명이 아님에 주의) × ④700(만원) = 700만원 총 7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가목 2) 그 밖의 경우

{①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②법 제29조의7 제1항제1호의 금액} + {③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④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 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
②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의 금액 (-)
③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수 1명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금액 (700만원)

사업연도	2019.1.1 ~ 2019.12.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01					
	소득조정 금 액	⑪ 익금 산입	02				
	⑫ 손금 산입	03					
	⑬ 차가감소득금액 (⑩+⑪-⑫)	04					
	⑭ 기부금한도초과액	05					
	⑮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⑯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⑬+⑭-⑮)	06					
	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⑯=⑩)						
	⑱ 이월결손금	07					
	⑲ 비과세소득	08					
과 세 표 준 계 산	⑳ 소득공제	09					
	㉑ 과세표준	10					
	㉒ 선박표준이익	55					
	㉓ 과세표준(㉑+㉒)	56					
	㉔ 세율	11					
법인세 계산	㉕ 산출세액	12					
	㉖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㉗ 세율	14					
	㉘ 과세표준(㉓+㉖)	42					
	㉙ () 세액	43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㉚ 계(㉘+㉙)	44					
	㉛ 차감납부할세액(㉜-㉚)	45					
	㉜ 수시부과세액	46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8. 3. 21.>

(3쪽 중 제1쪽)

사업연도	2019. 1. 1 ~ 2019. 12. 3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5. 추가납부세액

	(12) 구 분	(13) 근거법 조항	코드	(14) 대상금액	(15)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16)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17)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18) 공제 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19) 기타		775	7,000,000	7,000,000
	(20) 소계		780	7,000,000	7,000,000
	(21)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법인세법 등	(22) 업무 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23)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24)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25)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26) 기타		785		
	(27) 소계		784		
(28) 추가납부세액 합계(19 + 20)			790	7,000,000	7,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업연도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19) 구 분	(20) 공제감면 받은연도	(21) 추가납부 사 유	(22) 공제감면 세 액	가 산 액			(26)법인세 추가납부액 (22+25)
				(23)이율 (일변)	(24)기간	(25)금 액 (22×23×24)	
1	2018	청년외근로자 감소	7,000,000	-	-	-	7,000,000
계			7,000,000				7,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⑦(⑨+⑯+⑧)

7,000,000

첫페이지로 이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3. 20.>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고인 인적사항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히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 297mm [백상지 80g / m² 또는 중질지 80g / m²]

첫페이지로 이동

CASE 6**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증가, 청년 외 증가**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9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4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②)	3	8	13

※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임

1. 2018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공제금액 계산 (1) + (2) = (9,8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5,1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4 - 3 = 1$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4\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4,400\text{(만원)}$

청년외: $1\text{(명)} \times 700\text{(만원)} = 700\text{(만원)}$ 총 5,100(만원)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2차년도 공제금액 (4,7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4 - 3 = 1$ (명) 증가 총 5명 증가

=>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2018년도에 공제받은 금액을 2019년도에 한 번 더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생략)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하 생략)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3,300(만원)

청년외: 1,400(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19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9 - 5 = 4$ (명) 증가

청년외: $4 - 3 = 1$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납부금액 없음

=> 전체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 감소하지 않은 바, 납부할 세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제1호에서 ①전체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 또는 ②전체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특례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19. 3. 20.>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3쪽 중 제1쪽)

② 과세연도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⑥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⑧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⑥-⑦)
13	8	5

2.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	⑪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⑨-⑩)
9	5	4

3.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수	⑭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⑫-⑬)
4	3	1

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법인 구분	구분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공제금액	⑯ 1차년도 세액공제액
중소 기업	수도권 내	청년 등	4	1천1백만원	4,400만원
		청년 등 외	1	7백만원	700만원
	수도권 밖	청년 등		1천2백만원	
		청년 등 외		7백7십만원	
중견 기업	계		5		5,100만원
	청년 등			8백만원	
	청년 등 외			4백5십만원	
일반 기업	계				
	청년 등			4백만원	
	청년 등 외				
계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⑯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⑰ 1차년도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⑱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⑯-⑰)
13	8	5

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 자 증가 세액공제 액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㉑ 2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부	3,300만원	1,400만원	4,700만원
	여			
여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㉒ ≥ 0

1.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㉓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㉔ 1차년도 (전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㉕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㉒-㉔)
해당없음		

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 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 감소여부	㉖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 로자 증가 세액 공제액	㉗ 1차년도(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㉘ 3차년도 세액공 제액
부	부			
	여			
여				

④ 세액공제액 : 1차년도 세액공제액 ⑯ + 2차년도 세액공제액 ㉑ + 3차년도 세액공제액 ㉘ 9,8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3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성지 80g/m²]

첫페이지로 이동